

[별지 2]
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13.12.30>

도로공사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 (공사시행자)	성명 장진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10, 108동 801호 (전화번호 : 010-3943-3525)	생년월일 82.02.25	
신고 구분	[■] 사전 [] 사후		
공사 시행	일시 2021.04.01.~2021.05.31		
	장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606, 물곡2교(상, 청평방향)		
공사 기간	2021. 04. 01. ~ 2021. 05. 31. (기간 중 3일간)		
공사시행 방법	본 통제는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으로 교량 시점부에서 종점부 방향으로 통제를 실시하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시행함.		
그 밖의 사항	굴절점검차를 이용한 점검으로, 통제시 교통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 구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통제함.		

「도로교통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1년 03월 30일

신고인

장진원 (서명 또는 인)

○○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(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2. 공사 현장 도면 3.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첨부서류 (예시)

도로공사 교통관리 계획(대책)

1. 공 사 명 : 국도37호선 물곡2교(상) 정밀안전진단 용역
2. 공사목적 : 교량의 정밀안전진단
3. 공사구간 : 물곡2교(상, 청평방향)
4. 교통소통·처리대책
 - 가. 공사 시작전 교통관리는 우선적으로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.
 - 나. 야간 공사시 “공사 안내 입간판·교통안내입간판·교통안전표지판 및 수신호 안전요원·윙카·안전헬스·라바콘 등”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를 예방토록 한다(주·야간 공사 모두 해당)
 - 다. 공사 현장이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음을 줄이고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로 확보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우회 조치토록 한다.
 - 라. 공사 시공 구간에는 교통 정체 해소와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왕복교차, 통과 차선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토록 한다
 - 마. 교통 혼잡지역, 4거리, 3거리,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요원(수신호 요원)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- 신호수 상시 양방향 배치
 - 바. 공사시 잔재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거나 인도에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잔재물은 즉시 제거한다.
 - 사. 기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교통관리에 철저히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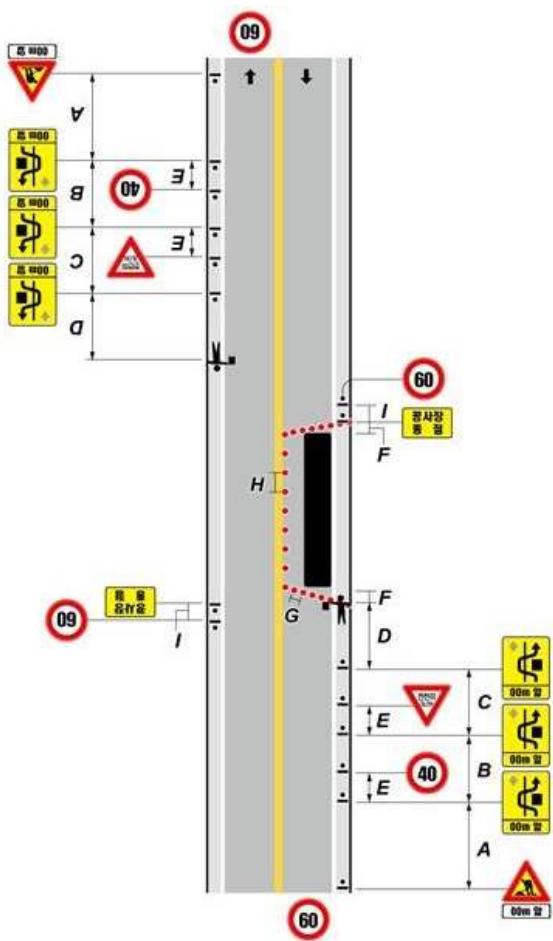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 1

교통 관리 및交通安全시설 설치계획

(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

교통관리 및 시설설치 도면(예시도 참조)

※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



도로명

국도37호선

도로종류

- ☐ 간선도로
☐ 이면도로
☒ 자동차전용도로
☐ 고속도로

공사시간

- ☒ 주간
☐ 야간
☐ 주야간
09:00 ~ 17:00
__:__ ~ __:__

지시 표지	공사 안내판	교통 안내판	안전휀스	라바콘	발광 싸인보드	드럼	경광등	신호수
2 개	2 개	4 개	-	50개 이상	2 개	-	5 개	2 명
발주처 :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			담당자 : 김 형 균			연락처 : 031-820-1753		
시공사 : (주)명성엔지니어링			담당자 : 장 진 원			연락처 : 010-3943-3525		
			현장책임자 : 장 진 원			연락처 : 010-7670-0624		

첨부서류 2

도면(현장위치도)

